

수원지방법원 2022. 6. 10 선고 2021나5595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6. 10 선고 2021나55951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1. 27 선고 2019가단6486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주식회사 A

2. B

3. 주식회사 C

피고, 피항소인 D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곤

변론종결 2022. 4. 29.

판결선고 2022. 6. 10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1. 27. 선고 2019가단64863 판결

주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E 사이에 전북 부안군 F 임야 2,579㎡ 중 1/7 지분에 관하여 2018. 4. 15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E에게 전북 부안군 F 임야 2,579㎡ 중 1/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8. 5. 3. 접수 제91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가. 원고들의 주장

- 1) E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,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합692 토지인도 등 사건(이하 ‘관련 소송’이라 한다)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E이 원고 A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 A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 A은 여전히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.
- 2) 원고 B, C가 진행한 공사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소유권은 위 원고들에게 유보되어 있고, 위 건축자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그 소유자인 E에게 귀속되었으므로, E은 위 원고들에게 그 자재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- 3) 따라서 원고들은 E에 대한 위 공사비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나. 판단

1) 원고 A의 공사비채권 존부

갑 제10, 11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,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 A과 피고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, 피고 및 E은 2014. 9. 30.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관련 소송에서 2016. 10. 17. 피고 및 E, 원고 A 등 사이에 ‘원고 A이 2018. 4. 30.까지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 피고에게 매매대금 700,000,000원을 지급하되 피고와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 대출 절차에 협조하고, 원고 A이 위 기한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으며, 원고 A이 위 사용승인 또는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,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고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’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, 원고 A은 2018. 4. 30.까지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위 기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에 따르면,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A과 피고이며, E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이자 관련 소송의 원고로서 관련 소송의 조정조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이다. 그런데 원고 A은 관련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,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그 조정조항에 따른 원고 A의 권리 소멸이 쌍방의 의무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원고 A의 E에 대한 공사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) 원고 B, C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존부

원고 B, C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소유권을 유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설령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의취득이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제3자는 그 가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원래 수급인 이외의 제3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그 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261조에 의한 보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바(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다8624 판결 참조),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, 원고들과 피고 및 E 사이의 관계, 공정의 진행 정도 및 공사대금의 지급 방식,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면, 위 건축자재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의 소유로 될 당시 E은 위 건축자재의 소유권이 원고 B, C에 유보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E으로서 위 건축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, 그 결과 위 원고들은 E에게 그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따라서 원고 B, C의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준현, 판사 안희경, 판사 석윤민